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상벌위원회 지침

시행일 : 2019. 03. 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 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대학원에 적용된다.

제 2 장 학생상벌위원회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간사는 본 대학원 행정실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대학원 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상벌에 관련된 기타 사항

제6조 (회의)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개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표창 또는 징계의 의결을 요구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의결의 기한)

위원회는 표창 또는 징계의 심의를 요구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비공개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표 창

제9조 (표창의 종류 및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표창을 받을 수 있다.

1. 학업상 :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술상 : 학회활동과 논문발표 등을 통해 면학 및 연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3. 공로상 :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4. 문화상 : 문화부분에서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5. 체육상 : 체육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거나 체육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6. 모범상 : 교내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7. 기타 지도교수의 표창추천을 받아 총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0조 (표창추천)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는 제9조의 요건을 갖춘 학생을 표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공적조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제11조 (표창의 방법)

- ① 학업상은 원장상, 우등상으로 구분한다. 원장상은 본 대학원 졸업생 중 3개년 간 학업성적평균 최고득점자에게 졸업 시에 수여한다.
- ② 학업상을 제외한 표창은 전(前)학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4월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결격자)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표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 4 장 징 계

제13조 (징계 제청)

본교 학생생활규정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징계 제청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징계혐의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2. 징계혐의자의 진술서
3. 전공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
4.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5.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4조 (징계의 심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7일 전에 징계심의 대상이 된 학생에게 징계심의에 회부된 사실 및 출석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징계의 심의대상이 된 학생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징계의 심의대상이 된 학생이 2회 출석 또는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제청 할 수 있다.

제15조 (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 제청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학업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의 효력)

- ① 근신은 1주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수업이외의 학생자치활동에의 참여를 금한다.
- ② 유기정학은 1주일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기정학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③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 수업을 받을 수 없다.
- ④ 제적은 본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17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 제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8조 (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양정, 절차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징계처분의 발효)

징계처분의 발효일자는 징계가 결정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통보)

행정실장은 징계의 결정을 받은 즉시 관계부서, 징계당사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